

-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附法 § 48③, 附승 § 90④)
-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
 - 2021.1.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 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3.06.07 개정)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제목개정)] 제2항,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2007.12.31 조번개정)]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결정과 경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①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 제2항 및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항은 적용한다.(2013.06.28 개정)
-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제목개정)]
- ②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07조(조기환급)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개정)
 3. 공제세액 및 그 계산 근거(2013.06.28 개정)
 4. 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의 제출 내용(2013.06.28 개정)
 5.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3.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전자화폐결제명세서
4.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 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6.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7. 건물 ·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9.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3에 따라 영세를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 ④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020.02.11 신설)

-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⑥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02.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06.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조기환급]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06.28 개정)

-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및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2020.02.11 항변개정)

- ⑧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2020.02.11 항변개정)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에 따른 서류(2013.06.28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4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2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에 따른 서류 (2013.06.28 개정)

- ⑨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에 기획재정부령[부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2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으로 정하는 매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20.02.11 항변개정)